##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78

발의연월일: 2025. 5. 12.

발 의 자: 박수현 · 윤종오 · 이개호

임오경 · 조계원 · 윤준병

이정문 · 김재원 · 황운하

조인철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안보에 이바지함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의2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 마.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함(안 제1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와"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 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시장가격이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공정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양곡가격안정 제도 대상품목의 공정가격(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차액[공정가격(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

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	제1조(목적)
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	
을 안정적으로 <u>확보함으로써</u>	<u>확</u> 보하고 생산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지
로 한다.	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
	<u>보와</u>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2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t;신 설&gt;</u>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u>4.</u> (생 략)	<u>6.</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u>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u>

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 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 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 여 양곡의 시장가격이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공정가격 (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 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 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u> 제16조 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 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 된 농지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대상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 · 고시된 양곡 가격안정제도 대상품목의 공정 가격(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의 차액[공정가격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를 말한다]의 지급비율을 제16 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16조(	가격안	·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1		

1. • 2. (현행과 같음)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②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 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 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 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 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 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 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 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 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

- ⑤ (생략)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 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u>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u> 다.
- ⑦ (생략)
- <신 설>

관리	양곡의	판매
----	-----	----

- ⑤ (현행과 같음)
- (b) -----

\_\_\_\_\_

----<u>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u>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7)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 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 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 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 가격

-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

   면적의 조정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 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

   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